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시행(대통령령 제18677호, 2005.1.14.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부동산(토지·건물)가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명 변경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성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평가함(안 제4조)

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사항을 성주군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개정조례안 : 붙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마.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성주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를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로 하며,

제2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토지평가업무주관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주관과장이 되며”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위원은 군 소속 재산세과세표준 및 토지거래업무 담당공무원, 국세청재산세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제7조 제2항 중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가”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이”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토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제2조(위원회 구성)①~② (생 략)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평가업무주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조(위원회구성)①~② (현행과 같음) ③----------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주관과장이 되며, ----------.
④ (생 략) ⑤ 위원은 군 소속 재산세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 공무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군 소속 재산세 과세표준업무및 토지거래업무 담당공무원, 국세청 재산세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가----------.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담당이----------.